

## 2021년 달라지는 제도

### ■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(대구시)

- ▷ 발행규모(목표) : 1조원
- ▷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 이용 편의성 제고 - 대구행복페이 전용 앱(IM샵) 내 실시간 PUSH 알림기능 추가 및 모바일 결제 기능 추가(하반기 예정)
- ▷ 상품권명/발행형태 : '대구행복페이'/모바일 '앱' 충전식 선불카드
- ▷ 혜택
  - 사 용 자 : 대구행복페이 충전시 10% 구매할인, 카드발급수수료 면제
  - 소상공인 :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상품권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
- ▷ 구매한도 : 1인당 월 50만원, 연 600만원 - 충전한도(카드당 50만원)
- ▷ 사 용 처 : 지역 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전통시장/소상공인 업소
  - 대형마트, 아웃렛, 유흥업소, 사행성업소,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

### ■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(대구시)

- ▷ 지원대상 : 장기요양 등급 외(A, B)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중 대구 1년 이상 거주자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p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  - 중위소득 75% 이하의 자
- ▷ 지원시기 : 2021년 2월 ~ 11월
- ▷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1인 20만원 이내의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차등지원(구입금액 기준)
  - 기초수급자/의료급여수급자(100%), 차상위계층(92.5%), 중위소득 75% 이하인 자(85%)
- ▷ 신청접수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### ■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확대(대구시)

구 분	2020년	2021년
거주기준	예비신랑·신부 중 1명이 대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소재	예비신랑·신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
소득기준	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	소득기준 폐지
예식규모	- 총 예식비용 1,000만원 이하 - 하객 수 150명 이하	- 총 예식비용 1,000만원 이하 - 하객 수 제한 폐지
예식장소	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공공시설 또는 종교시설, 공원, 카페 등의 장소	
지원내용	결혼식 비용 100만원 지원	
지원방법	사전신청(연중) → 결혼식 후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계좌 입금	

### ■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(대구시)

- ▷ 대 상 : 고등학생 이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조기시행(2022년 → 2021년 시행)
- ▷ 시행일 : 2021년 3월 1일부터
- ▷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 5% 인상

■ 안전속도 5030 시행(대구시)

- ▷ 도시부 내 일반도로(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)의 차량 제한속도 : 50km/h
- ▷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 : 60km/h
- ▷ 시행일 : 2021년 4월 17일

■ 기초연금액 인상

- ▷ 지원대상 : 소득하위 70% 이하인 어르신
- ▷ 지원내용 : 소득하위 40%~70% 사이의 수급자(기존 250~255천원 지원)도 월 300천원으로 인상
  - 부부인 경우 20% 감액

■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 인상

- ▷ 지원대상 : 소득하위 70%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▷ 지원내용 :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

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

- ▷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/한부모 가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  - 단, 고소득(세전소득 연 1억원), 고재산(9억원)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준 적용

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

- ▷ 지원대상 : 중위소득 45%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
- ▷ 지원조건 :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/군을 달리하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인정

■ 「정부24」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확대

- ▷ 신청방법 : 민원창구 방문 없이 민원인이 '정부24(<http://www.gov.kr>)'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재발급 신청(수령시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에 지문취득 및 안면비교)
- ▷ 기대효과 : 민원창구 방문 횟수 감소(2회 → 1회)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

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

- ▷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

현 행	변 경
- 승용자동차 등 : 8만원	- 승용자동차 등 : 12만원
- 승합자동차 등 : 9만원	- 승합자동차 등 : 13만원

- ▷ 시행일 : 2021년 5월 11일

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

- ▷ 시행대상 :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(마대)에 별도 분리 배출
  - 단독주택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 시행
- ▷ 배출방법 :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단아서 배출
- ▷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통합 배출

■ 2021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행

- ▷ 최저임금액 : 8,590원(2020년) → 8,720원(2021년)
- 월 환산액(1,822,480원) :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209시간 기준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■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안전 강화

- ▷ 적용대상 : 세그웨이류, 전동킥보드, 전기자전거, 전동휠, 전동보드, 전동 휠체어 등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25km/h 내외인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
- ▷ 이용자격 : PM면허 신설 및 무면허 운전 금지,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(보호자 처벌)
  - 이용연령 상향 예정(13세 → 16세)
- ▷ 기타 안전규정 :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, 동승자 탑승금지, 야간 운전 시 등화장치작동, 약물/과로/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금지
- ▷ 시행일 : 2021년 4월(예정)

■ 3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

- ▷ 3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
- ▷ 쉬는 공휴일
  - 국경일 중 3.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1월 1일, 설/추석연휴 3일, 부처님 오신날, 성탄절, 어린이날, 현충일,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, 기타 수시 지정일(임시공휴일), 대체공휴일
- ▷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?
  - 공휴일 근무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.
  - 다른 날을 대체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

- ▷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대리운전 기사 등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’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이 됨
  -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
- ▷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,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일정 수준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자격 인정